

의안번호	제 397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0년 4월 13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9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0년 4월 13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지방세법」 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 지역자원시설세의 분류체계 및 과세목적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정비에 따른 조문수정
(안 제11조, 안 제13조, 안 제15조, 안 제17조, 안 제18조, 안 제20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“법 제146조제4항”을 “법 제146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법 제146조제4항”을 “법 제146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15조 중 “법 제146조제4항”을 “법 제146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17조 중 “법 제146조제1항제6호”를 “법 제147조제2항제3호”으로 한다.

제5장제5절의 제목 중 “특정부동산에 대한”을 “소방분”으로 한다.

제18조 중 “법 제146조제4항”을 “법 제146조제5항”으로, “특정부동산에 대한”을 “소방분”으로,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한다.

제20조 중 “법 제147조제3항”을 “법 제147조제6항”으로, “특정부동산에 대한”을 “소방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세울) <u>법 제146조제4항</u>에 따른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</p>	<p>제11조(세울) <u>법 제146조제5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3조(세울) <u>법 제146조제4항</u>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</p>	<p>제13조(세울) <u>법 제146조제5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5조(세울) ① <u>법 제146조제4항</u>에 따른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15조(세울) ① <u>법 제146조제5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7조(신고 및 납부) <u>법 제147조제1항제2호</u>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<u>법 제146조제1항제6호</u>에 따라 매월 산출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</p>	<p>제17조(신고 및 납부) ----- -----<u>법 제146조제2항제3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5절 <u>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</u></p>	<p>제5절 <u>소방분</u> -----</p>

제18조(세율) 법 제146조제4항에 따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같은 조 제2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

제20조(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) 법 제147조제3항에 따른 발전용수, 지하수, 지하자원, 화력발전,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은 충청북도 전 지역으로 한다.

제18조(세율) 법 제146조제5항-----
- 소방분 -----
-----제3항-----
-----.

제20조(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) 법 제147조제6항-----

소방분 -----

-----.

관계 법령

■ 지방세법

제142조(과세대상)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.

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: 다음 각 목의 것

가. 발전용수(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)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이 장에서 “발전용수“라 한다)

나. 지하수(용천수를 포함한다)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이 장에서 “지하수“라 한다)

다.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이 장에서 “지하자원“이라 한다)

2.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: 다음 각 목의 것

가.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이 장에서 “컨테이너“라 한다)

나.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이 장에서 “원자력발전“이라 한다)

다.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이 장에서 “화력발전“이라 한다)

3.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: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(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 및 선박(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

[전문개정 2019. 12. 31.]

[시행일 : 2021. 1. 1.] 제142조

제146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발전용수: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
2. 지하수
 - 가.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: 세제곱미터당 200원
 - 나.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: 세제곱미터당 100원
 - 다.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: 세제곱미터당 20원
3. 지하자원: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

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컨테이너: 컨테이너 티이유(TEU)당 1만5천원
2. 원자력발전: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1원
3. 화력발전: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0.3원

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1.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.

과세표준	세 율
600만원 이하	10,000분의 4
600만원 초과 1,300만원 이하	2,400원 + 600만원 초과금액의 10,000분의 5
1,300만원 초과 2,600만원 이하	5,900원 + 1,300만원 초과금액의 10,000분의 6
2,600만원 초과 3,900만원 이하	13,700원 + 2,600만원 초과금액의 10,000분의 8
3,900만원 초과 6,400만원 이하	24,100원 + 3,900만원 초과금액의 10,000분의 10
6,400만원 초과	49,100원 + 6,400만원 초과금액의 10,000분의 12

2. 저유장, 주유소, 정유소, 유흥장,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.

2의2. 대형마트, 복합상영관(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), 백화점, 호

텔,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.

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,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,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 다만,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 다만,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.

[시행일 : 2021. 1. 1.] 제146조

제147조(부과·징수)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.

1.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. 다만,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.
2. 제1호 본문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제14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(이하 이 조에서 “산출세액“이라 한다)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
3. 납세의무자가 제2호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.

- 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, 제115조 및 제122조(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)를 준용한다.
-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·징수한다.
- ④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면 건축물 또는 선박으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.
- ⑤ 삭제 <2019. 12. 31.>
- ⑥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⑦ 제6항의 경우에 컨테이너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·징수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

[시행일 : 2021. 1. 1.] 제147조